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681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8. 1. 24. 접수 제11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소외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다. G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0286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2. “피고는 원고에게 2,318,934원과 그 중 2,175,264원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G는 2020. 11. 23. 원고에게 위 다.항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C는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8. 1. 24. 접수 제11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2021. 11. 2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2,175,264원, 이자 6,774,430원 합계 8,949,694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C에게 자신의 자금 또는 언니인 소외 H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합계 1억 3,68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C와의 관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C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